

의안번호	제501호
의결 연월일	. . . (제회)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월 15일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1
----------	-----

발의연월일 : 2024년 1월 15일

발 의 자 :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의영,
이양섭,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쌀가공산업 지원 대상 (안 제7조)
- 쌀가공산업 육성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조례안예고 : 2024. 1.
- 협 의 : 충청북도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쌀 및 쌀가공용품 유통지원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 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 관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

2. 쌀가공산업 활성화 시설 운영 및 설치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쌀가공산업에 관한 교육·홍보

5. 쌀 및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식문화개선 사업

6. 쌀가공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제7조(지원 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가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자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1. 신고: 14일
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 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2020. 12. 29.>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3.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종류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첨가하는 경우. 다만,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주류를 제조장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등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주세법」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쌀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쌀가공산업 육성

2. 비용 발생 요인

- 쌀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쌀 및 쌀가공용품 유통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조례안 제6조(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조례안 제7조(지원 대상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24~' 25년)
- 내용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쌀가공산업분야 보조사업(벼 재배농업인 경영지원 외 4종)
 - (기준) 벼 재배농업인 경영지원 : $90,000\text{원} \times 29,444\text{ha} \times 5\text{년} = 13,250,000\text{천원}$
 - (기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 : 11,641,000
 - 24년 : $8,964,000\text{천원} \times 1\text{식} = 8,964,000\text{천원}$
 - 25년 : $2,677,000\text{천원} \times 1\text{식} = 2,677,000\text{천원}$
 - (기준) 노후 RPC·DSC 지원 : $229,000\text{천원} \times 6\text{개소} \times 5\text{년} = 6,875,000\text{천원}$

- (신규) 충북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 20,000천원 × 1식 × 5년 = 100,000천원
- (신규) 충북쌀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 3,000,000천원
 - 포장재, 물류비 등 지원 : 5,000천원 × 20개소 × 5년 = 500,000천원
 - 공동브랜드 유지관리 등 지원 : 5,000천원 × 20개소 × 5년 = 500,000천원
 - 유통장비 및 시설 등 지원 : 50,000천원 × 8개소 × 5년 = 2,0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13,609,000	7,322,000	4,645,000	4,645,000	4,645,000	34,866,000
벼 재배농업인 경영지원	2,650,000	2,650,000	2,650,000	2,650,000	2,650,000	13,250,000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지원	8,964,000	2,677,000	-	-	-	11,641,000
노후 RPC·DSC 지원	1,375,000	1,375,000	1,375,000	1,375,000	1,375,000	6,875,000
충북쌀 공동 브랜드 개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충북쌀 공동 브랜드 육성 지원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재원 조달	13,609,000	7,322,000	4,645,000	4,645,000	4,645,000	34,866,000
국비	5,978,000	1,784,000	-	-	-	7,762,000
도비	4,158,300	3,530,400	3,262,500	3,262,500	3,262,500	17,476,200
시군비	3,472,700	2,007,600	1,382,500	1,382,500	1,382,500	9,627,800